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 이행보증과 병행해야

기사입력 2013-03-21 06:00:24 |

정책연, 보증기간 단축·공공부터 점진 확대도

6월 말부터 시행될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이 차질없이 정착하려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건설기계업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장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도입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금 지급보증 취지에는 건설업계도 공감했다. 국토부도 지난 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6월 19일부터 새 보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문제는 건설사의 기계대금 체불로 인한 기계업자 피해를 구제할 지급보증만 시행될 뿐, 기계업자의 파업·무단이탈·지시 불이행 등의 계약위반 행위에 따른 건설사 피해를 막을 장치가 없는 점이다. 원하도급 관계만 해도 원도급사는 대금지급을, 하도급사는 계약이행을 각각 보증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도 최근 주관한 건설기계 보증 관련 회의에서 나온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했기 때문에 대금지급 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이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증상품을 운용할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보증 대지급금 지급 부담을 줄일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간 국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체불신고 건수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1400억원이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청구금액을 토대로 한 추정치는 3030억~4030억원, 그리고 건설노조의 체불 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산정치는 4300억원에 달한다.

기계협회 통계의 과소추정 가능성, 건설노조 통계의 과대추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도 최소 3000억원을 상회하는 기계대여료가 매년 체불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상품을 운용할 조합의 부실화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런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대상을 일단 공공공사로 한정한 후 단계적으로 넓혀갈 것을 제안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증도 공공공사에 국한되고 포괄대금지급보증은 아예 최저가공사 낙찰률 하위 10%에 상당하는 공공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4개월의 보증기간도 현금지급 원칙, 표준계약서상 대여금 지급기한(60일 이내)을 고려할 때 2개월로 줄이고 보증금액도 500만원~1억원으로 상·하한선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다른 보증들처럼 면제대상도 공제조합 신용평가 최고등급, 계약기간 15일 이하, 5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하도급계약적성심사 제외공사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선구 책임연구원은 "6조~8조원에 달하는 건설기계 대여시장과 3000억원이 넘는 체불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증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고 결국 원하도급 건설사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보증 회피를 위한 건설사들의 계약기간 초단기 설정 등 폐해 가능성은 막아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시행 이전에 이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